

화성상공회의소

18590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토성로 14
031-350-7942 / alsps5@korcham.net / 조사진흥팀 / 민혜민

화상조 : 제 1616 호 2025. 1. 10.

수 신 : 기업 대표(이사)

참 조 : 환경 및 ESG 담당자

제 목 : 「경기 기후환경협의체」 추진 사업 안내 및 정기총회 개최 알림

1. 귀사의 일익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 기후환경협의체」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협의체 안건을 심의하고, 화성시 기업의 환경 배출업소 및 자율점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안내를 진행하오니 화성시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 시 : 2025.01.16.(목) 10:00 ~ 11:00

나. 장 소 : 화성상공회의소 3층 세미나홀

다. 대 상 : 경기 기후환경협의체 가입 기업 및 자율점검 관심 기업
(미가입 기업 또한 참석 가능)

라. 세부내용

소요시간	내 용	비 고
10:00~10:45	경기 기후환경협의체 정기총회 (정관 개정, 임원 선출, 사업계획)	화성상공회의소
10:45~11:00	경기도 사업 및 화성시 자율점검제도 지정 절차 안내	경기도 기후환경관리과 화성시 환경지도과

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화성상공회의소 홈페이지→기업지원사업 게시판)
(<https://walla.my/v/ZhoV6FfxOyJVFNpRQ1pf>)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혜민 매니저(☎031-350-7942)에게 문의 바랍니다.

붙 임 :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는 사업장 1부. 끝.

화성상공회의소 회장 안상교



[붙임]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는 사업장

구 분	자율점검업소 지정대상 사업장
<p>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만 있는 경우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1개소 이상 설치한 사업장 2.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단순 보일러 시설만 설치하거나,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장 3.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이면서 최근 2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4.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서 최근 3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p>폐수배출시설만 있는 경우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 2.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1호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장 3.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장 4.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장 5.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로서 최근 2년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 6.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이면서 최근 2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7.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면서 최근 3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8.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발생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 하는 사업장
<p>소음진동시설만 있는 경우</p>	<p>「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18조 별표7에 따른 환경기술인이 임명되어 있는 사업장</p>
<p>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폐수배출시설, 소음진동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p>	<p>각 분야에서 정한 자율점검업소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p>
<p>기타 수질 오염원만 있는 경우</p>	<p>「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의 기타 수질오염원 중 사진처리 또는 X-ray 시설과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이나 안경점으로서 발생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 하는 사업장</p>
<p>사업장 일반폐기물 배출자</p>	<p>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를 받은 사업장</p>
<p>폐기물 수집·운반업 (임시보관시설 미보유)</p>	<p>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종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보관장소를 보유하지 않은 사업장</p>